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환경 관련 제도

올 하반기부터는 국립공원 안에도 부분적으로 주유소 등을 지을 수 있으며 식당이나 목욕탕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또 정수기의 소비자피해보상 의무기한이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환경부는 지난 6월 28일 하반기에 달라지는 환경 관련 제도를 정리, 발표했다.

▲국립공원 = 현재는 국립공원내 취락지구인 경우 환경보전을 이유로 주민들의 행위가 많이 제한됐으나 하반기부터는 일부 완화된다.

현 취락지구는 앞으로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구분되며 밀집취락지구인 경우 탐방여건이나 공원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밀집취락지역에서는 주유소 등을 지을 수 있고 목욕탕이나 음식점 등도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생태계보전협력금 = 지금까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시 총 사업비를 대상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산정 부과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생태계의 훼손정도를 기준으로 협력금을 부과한다.

▲저황중유 공급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울산 수원 안산 등 7개 도시의 중유황 함유량 기준이 종전 0.5%에서 0.3%로 낮아지며 춘천 강릉 동해 삼척 충주 제천 당진 목포 등 8개 도시는 1.0%에서 0.5%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규제지역이 추가되고 페인트, 인쇄잉크 등 제품에 대한 유기용제 함량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환경부는 여름철 오존오염의 주범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고 지난 7월 9일 밝혔다.

▲중수도 · 빗물 이용시설 = 숙박업이나 목욕탕업, 공장, 백화점 등 대형건물은 신축시 중수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붕면적이 넓은 체육시설은 신축시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수도사업 민영화 = 지금까지 수도사업은 국가나 지자체 등만이 운영가능했으나 하반기부터는 민간인도 인가를 받아 수도사업을 할 수 있다.

▲정수기 소비자피해보상 의무 기한 = 정수기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종전에는 판매 후 2년간 보상을 해주었지만 하반기부터는 1년만 보상해준다.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민영화

환경부는 그동안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하던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을 민간기업인 (주)미래와환경콘소시엄((주)미래와환경(대표 홍성민), (주)한솔제지(대표 차동천) 공동수급)에 위탁관리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부출연 · 위탁기관 경영혁신계획』('98. 8. 20)에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 VOC 규제지역 확대

내년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규제지역이 추가되고 페인트, 인쇄잉크 등 제품에 대한 유기용제 함량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환경부는 여름철 오존오염의 주범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고 지난 7월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현재 VOC 규제를 받고 있는 서울, 인천, 경기, 여천, 울산 등외에 부산, 대구, 광양지역을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있는 주유소, 정유소 등은 VOC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규제가 뒤따른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04년까지 VOC를 다량 배출하는 페인트나 인쇄잉크 등 제품에 대해 유기용제 함량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특히 오는 2004년까지 시한인 5대 정유사의 VOC방지시설

설치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 빠른 시일 내에 방지시설 설치를 독려하는 한편 기존 VOC 배출이 많은 유조차의 상부적하방식을 하부적하방식으로 개조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개선자금 융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VOC 규제대상물질은 벤젠, 톨루엔, 휘발유 등 37개 물질이며, 관리업종은 석유화학업, 유기용제업, 자동차정비업 등 10개 업종이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2005년부터 VOC 규제지역을 전국 대도시로 확대하고 휘발성이 적고 인체에 무해한 도료개발 등을 강제하는 등의 장기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 오수처리 시설기준 강화

앞으로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할 경우 실질적으로 한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등기상 다른 소유자가 있더라도 특정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 연면적 기준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7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축에 관한 특례 조항의 동일인 범위를 단독 관리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미혼의 형제자매와 함께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인접해 있는 건물을 실질적인 소유자와 배우자, 자녀 등이 공동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건물을 소유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실질적인 소유자의 소유물로 간주, 건물의 연면적을 합산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앞으로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할 경우 실질적으로 한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등기상 다른 소유자가 있더라도 특정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 연면적 기준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증축에 관한 특례 조항의 동일인 범위를 단독 관리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미혼의 형제 자매와 함께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확대했다.

현재 관련규정은 연면적 1천600㎡ 이상인 건물의 경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방류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일정기준 이하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분뇨 재활용업체들이 설치한 재활용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문제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소각장 폐열 난방용 판매 방안 추진

인천시는 폐기물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난방용 등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市)는 오는 9월 가동 예정인 서구 경서동 청라도 생활쓰레기 소각장과 2004년 완공 예정인 남부폐기물 소각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주변 공장 등에 파는 방안을 수립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시는 청라도 소각장에서 하루 500t의 쓰레기를 태우고 나오는 75t의 열을 발전시설을 갖춰 자체 소각장과 소각장내 열대식물원에 공급하거나, 주변에 건설중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와 동아매립지내 영농단지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남부소각장(1일 600t)에서 발생하는 열을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사가 건설 예정인 남동구 논현동 열병합발전소에 공급, 난방용 등으로 쓰는 방안을 주공과 협의하고 있다.

보령시, 쓰레기 배출 방법 개선

충남 보령시는 주민 편의를 위해 쓰레기 봉투를 일반규격 봉투, 특수규격 봉투, 공공용 봉투 등 3가지로 구분해 수거하는 보령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읍 · 면 · 동에 신고하고 스티커를 부착한 후 배출해야 했던 깨진 유리, 집수리 폐기물, 정원 손질 등에서 나오는 쓰레기 경우 2종류의 특수규격 봉투(50ℓ.1천

100원, 100ℓ.2천200원)를 슈퍼 등에서 구입, 사용하면 된다.

또 가전제품, 가구류 등 대형 폐기물도 읍·면·동에 신고없이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서 해당 품목의 수수료만큼 스티커(3종, 100원(흰색), 300원(녹색), 5000원(파란색)를 구입, 부착한 뒤 내놓으면 된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기업 1천275개로 늘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받는 전국의 사업장수가 종전 150여개에서 올해 1천275개로 크게 늘어난다.

환경부는 지난 6월 27일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기업을 종전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조사대상 물질도 80종이던 것을 160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나 화학 등 화학물질을 주로 다루는 23개 업종의 1천275개 사업장은 다음달 중으로 사업장 내 화학물질 배출량을 정밀 파악,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배출량 조사제도(TRI)란 굴뚝 등 오염물질 배출장소에서 나가는 화학물질 외에 생산공정 중에 대기 중으로 누출되거나 토양에 스며드는 화학물질의 양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계획기구(OECD)의 권고에 따라 지난 99년부터 일부 업종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받는 전국의 사업장수가 종전 150여개에서 올해 1천275개로 크게 늘어난다.
환경부는 지난 6월 27일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기업을 종전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조사대상 물질도 80종이던 것을 160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새로 조사대상이 되는 기업을 위해 2주간 조사지침과 조사표 작성방법 등을 교육시킬 예정이며 교육이 끝난 후 기업이 자체 조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물질은 굴뚝 등에서도 많이 배출되지만 공장 내에서 증발되거나 수송파이프, 저장시설 등에서도 많은 량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원료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배출량 조사를 받는 기업의 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보험 도입된다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보험'이 도입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99년 '재난보험 시행방안 연구"를 삼성화재 측에 의뢰한 용역결과 환경보험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지난 6월 24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환경오염 배출업체가 배상금 부담으로 인해 파산까지 이르는 등 기업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보험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손실 위험부담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환경보험 도입을 꺼리고 있지만 환경부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법안'이 입법발의된 것도 환경보험 도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입법안은 환경오염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의 경우 사업자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도록 규정해 원활한 배상이 이뤄지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관계자는 "배상책임법안과 환경보험이 도입되면 오염원 배출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확보하고 손해배상금으로 인한 기업파산 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보험이 도입되면 의무가입을 전제로 환경오염 위험과 피해규모가 큰 5천여개 사업장에 우선 시행될 전망이다.

팔당호 주변 4개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경기도 남양주시는 오는 2003년 4월말까지 90여억원을 들여 팔당상수원 주변에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를 신설키로 했다.

최근 시(市)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20억9천700만원을 들여 1일 처리용량 200t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를 조안면 시우리에 착공했다.

또 7월중에 70억원을 들여 조안면 능내1, 삼봉1.2리에 1일 처리용량 200t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각각 건설에 들어갔다.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가 모두 완공, 가동되면 팔당상수원의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이달 시행

강원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며 도의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줄이고 각종 개발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도 자체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마련중이며 최근 강원도 규제대책협의회와 조례규칙심의회의에서 심의를 마쳤다.

도는 조례에서 환경부의 환영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중 · 소규모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공유수면 매립 및 농지 개간, 산지 개발, 토석 · 모래 · 자갈채취 등 3개 분야 9개 사업에 대해 주민설명회와 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해 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가 조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수원, 대구, 원주 등 전국 18개 지역에 하수슬러지 전용처리장이 오는 2004년까지 새로 확충된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등 유기성오니를 별도의 공정을 거쳐 처리하는 하수슬러지 소각 · 퇴비화시설을 전국 18개 지역에 신설키로 하고 내년부터 오는 2004년까지 총 2천73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키로 했다.

하수슬러지 전용처리장 18곳 신설

수원, 대구, 원주 등 전국 18개 지역에 하수슬러지 전용처리장이 오는 2004년까지 새로 확충된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등 유기성오니를 별도의 공정을 거쳐 처리하는 하수슬러지 소각 · 퇴비화시설을 전국 18개 지역에 신설키로 하고 내년부터 오는 2004년까지 총 2천73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키로 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하수슬러지의 대부분을 매립방식을 통해 처리해 왔으나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으로 오는 2003년 7월부터 유기성오니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슬러지를 소각해 퇴비화하는 전용처리장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 대구 원주 등 전국 18개 지역을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설사업에 착수키로 했으며 지자체의 재정형편을 감안해 일반 시 · 군의 경우 시설비의 70%까지, 광역시와 도는 30~50% 가량을 국고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한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운영 · 관리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민자유치를 추진하되 민간투자자의 초기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비의 50% 정도를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사업방침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수원, 오산, 김포 등 3곳에 하루 40~300톤 규모의 슬러지 소각장을 오는 2004년까지 건설키로 하고 국고 346억5천만원를 포함, 총 49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키로 했으며 강원지역에는 총 360억원으로 춘천, 강릉, 속초, 원주, 홍천, 횡성등 6곳에 시설용량 5~80톤의 소규모 처리장을 각각 신설키로 했다.

또 경남지역은 마산, 진주, 고성 등 3곳을 전용처리장 시범설치지역으

로 선정해 내년부터 2003년까지 총 462억원을 들여 하루처리 8~200톤 규모의 소각·퇴비화시설을 건설키로 했으며 제주도는 서귀포지역에 시설용량 20톤급의 전용처리장을 2003년말까지 건설하는데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광역처리장으로 건설 예정인 전남, 대구, 포항, 경산, 안동 등 5개 전용처리장은 지역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 민자유치를 통해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2004년까지 총 1천39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시설용량 100~600톤 규모의 전용처리장을 각각 건설키로 했다.

환경단체 간부가 공해배출 미끼 돈 갈취

경남 하동경찰서는 지난 6월 28일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위반행위를 촬영한 뒤 무마비조로 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공해추방국민운동본부 하동 지회장 강모(40.하동군 금성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99년 11월께 하동군 금남면 소재 모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태우는 것을 촬영한 뒤 현장소장을 찾아가 신분증을 보이며 확인서를 작성토록 한 뒤 "본부에 보고하지 않을 테니 후원금을 달라"고 요구,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33회에 걸쳐 1천3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김천시 고속철도 공사장 인근에서 양계농을 하는 김모씨가 고속철도 공사 때문에 2년간 양계장을 휴업했다며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휴업손실을 인정, 6천2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최근 결정했다

시민단체 돈 받고 환경감시

경기도 안산지역 시민단체들이 환경감시대상업체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환경감시에 나서기로 결정, 시민단체의 순수성을 상실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9일 안산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산·시흥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7개 시민단체와 성림유화㈜, 진도㈜ 등 반월·시화공단 내 7개 폐기물 소각업체는 최근 안산시청 회의실에서 '시민환경지킴이단'을 운영하기로 하는 자율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시민단체는 민간환경감시단을 구성, 폐기물 소각처리업체의 공해배출문제 등을 집중감시하게 되며 7개 소각업체는 환경감시단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7개 소각업체는 이에 따라 상근 감시단 7명에 대한 급여를 비롯, 식비, 차량유 지지, 통신비, 보험료 등으로 연간 8천만원을 환경감시단에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 안산지역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시민단체의 생명은 순수성과 청렴성에 있고 그 활동 역시 회원들의 순수 회비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감시대상업체로부터 운영비를 지급받는다는 것은 시민단체 본연의 임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위, 환경피해 휴업손실 보상 결정

공사장의 소음이나 진동 등 환경피해로 인해 인근 축산농가가 휴업을 했을 경우 그 손실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김천시 고속철도 공사장 인근에서 양계농을 하는 김모씨가 고속철도 공사 때문에 2년간 양계장을 휴업했다며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휴업손실을 인정, 6천2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최근 결정했다고 지난 7월 12일 밝혔다.